



# ZOOM-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51<sup>th</sup> November 2012

- ▶ WHERE IS GRACE CHANG?:  
BUSINESS FRIENDLY ..... 2
- ▶ ABOUT WRITERS ..... 2
- ▶ COVER STORY:  
한-중 AEO MRA 동향 / 2012 년 중소기업  
AEO 인증지원사업 ..... 3
- ▶ FTA NEWS:  
한-미 FTA 섬유규정 이것만이라도  
알아두세요! ..... 5
- ▶ VOICES FROM THE FIELDS:  
원산지 표시 제도 ..... 6
-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 7
- ▶ CUSTOMS PRECEDENT ④ ..... 8

## ZOOM-IN TRADE 를 소개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정보를 친구와 나누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Zoom-in Trade”를 친구들에게 소개하세요.

동료분의 이메일을 남기시면 줌-인트레이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센스 있는 친구가 되는 법!! 참 쉽죠?

E-mail 신청: [shinhan@customsservice.co.kr](mailto:shinhan@customsservice.co.kr)



SHINHAN

Since 1965

CUSTOMS SERVICE

[www.customsservice.co.kr](http://www.customsservice.co.kr)

[www.ftagateway.co.kr](http://www.ftagateway.co.kr)

WHERE IS GRACE CHANG?

Business Friendly



장승희  
대표 관세사

대한민국의 무역총액이 이탈리아를 넘어서 세계 8위에 올라섰습니다. 1964년 가발로 수출을 시작한지 48년만에 이루어낸 쾌거입니다. 전세계적인 불경기 속에서도 감소폭은 전년대비 1%에 그쳐 12월까지의 무역총액은 작년에 첫 가입한 '1조달러 클럽'을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지난 '반세기'간의 이러한 급성장에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열과 성이 뒷받침합니다. 가발수출을 위해 머리카락을 제공한 어머니들과 청계천의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던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산 물품을 팔기 위하여 전세계 곳곳 오지까지 들어갔던 보부상의 후예인 넥타이 부대가 있고, 사막의 열기에 물러서지 않고 건설이라는 business를 수출한 아버지들이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발전하였고 국가도 발전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발전하였습니다. 모두가 business friendly 정신으로 기업을 지원한 덕택입니다. 마중물을 부어주며 기업의 발전을 성원하였습니다. 기업과 나라의 외적 성장을 키우는 기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청년실업률은 증가하고 중산층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의 無償案들이 실행/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업에 '무상지원'된 마중물과 달리 이러한 무상지원이 국민 삶의 질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우는 놈 떡 하나 더 주는 정책보다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경쟁력을 키워주는 방안이 절실합니다. 외적 성장에 더하여 질적 성장을 이루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중물만 바라보지 말고 스스로 내실을 채워야 합니다.

이번달 Cover story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종합인증우수업체)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중상호인정협정의 성사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한-미 FTA에서 가장 난해한 섬유규정에 대한 기사, 수입 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내용도 정리하였습니다.

2012년 한 달이 남았습니다. 일년 동안 키워온 사업의 내실을 다지며 마무리 짓는 12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객감동서비스를 제공 드리는 신한관세법인이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감사합니다.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Grace Chang*

ABOUT WRITERS

COVER STORY -

한-중 AEO MRA 동향 및 중소기업 AEO 인증지원사업



신 성훈 관세사  
(shshin@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AEO Team 팀장
- 한국관세사회 AEO 인증 가이드북 발간 참여
- 용진패스원 강사 관세평가

FTA News-

한-미 FTA 섬유규정 이것만이라도 알아주세요!



이 선경 관세사  
(sklee@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Voices From The Fields-

원산지 표시 제도



성 기창 관세사  
(kcsung@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인천공항지사
- 항공화물 수출입 통관전담

관세 법령 변경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변경 소식



임 보화 관세사  
(bhlim@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인천경기공항지사
- 28기 관세사시험 수석합격
- 수출입업무 및 통관

Customs Precedent ㉠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영향 여부



박 종일 관세사  
(jipark@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통관 3팀
- 통관 3팀 팀장
- (주) 피델릭스 기업심사등

Cover Story

# 한-중 AEO MRA 동향 / 2012 년 중소기업

## AEO 인증지원사업

### 1. 들어가며

2009 년 대한민국 관세청이 AEO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게 된 이래로 만 3 년이 훌쩍 흘렀고 현재 366 개부문에서 258 개업체가 AEO 인증을 받음으로써 공인업체의 숫자가 세계 6 위 수준이고 수입금액을 기준으로는 전체 20% 가량이 AEO 인증업체에 의해 취급되고 있다.

특히 2011 년부터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 AEO 인증에 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중소기업의 참여가 급격히 증가하여 Supply Chain 의 물류보안과 법규준수에 주안을 두고 있는 AEO 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오늘날 가장 중요하고 큰 Issue 로 자리잡고 있는 AEO 에 관한 내용 중 한-중 AEO MRA 의 동향과 함께 2013 년도에도 시행예정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2. 한-중 AEO MRA(상호인정협정 :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동향**  
 수출입기업의 법규준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성실성을 공인해주는 AEO 제도는

### □ 우리나라 MRA 체결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7. 15	계
총공인	21	74	104	146	345
중소기업	9	13	37	99	158
중소기업비율	43%	18%	36%	68%	46%

※ 출처: WCO, AEO Compendium, 2011 및 관세청 발표자료

교육상대국과의 MRA 를 통해 그 효과 및 혜택이 극대화 될 수 있다. MRA 란 둘 이상의 국가가 AEO 와 같은 물류보안 인증제도를 상호 인정해 주기로 협정을 맺는 것으로 2012 년 현재 대한민국의 AEO 제도는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와 MRA 를 체결한 바 있으며 중요한 경제권역인 EU, 중국과 협상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중국과의 AEO MRA 는 한국의 경제지리적 입지를 고려하여 그 중요성이 상당히 크다 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AEO MRA 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활동들이 구체화 되고 있다.

AEO MRA 는 국가 간 공인기준 상호비교 → 상호방문합동조사 → 상호인정 운영절차 논의 → 최고정책결정권자 서명의 절차를 거쳐 체결된다.

얼마 전인 11 월 13 일에는 중국 해관총서 대표단과 대한민국 관세청이 공동으로 AEO MRA 체결을 위한 합동심사를 실시하였고 양 국 모두 심사결과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한-중 AEO MRA 는 5 부 능선을 훌쩍 넘는 셈이 된다  
 합동심사 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양국은 내년 초에는 MRA 운영절차 및 혜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 중에는 MRA 체결을 기대해 볼만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최대교역국인 중국과 AEO 상호인정협정이 맺어지면 우리 AEO 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없어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따른 관세장벽 견여내기와 함께 대단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분	국가	체결일	발효일
체결완료	미국	10.06.25	10.09.01
	싱가포르	10.06.25	11.01.01
	캐나다	10.06.25	미발효
	일본	11.05.20	11.11.01
	뉴질랜드	11.06.25	12.01.01
추진중	중국,EU		

1 단계	<b>공인기준 상호비교(Side-by-side Comparison)</b> - 양국의 세부기준을 1:1 방식으로 비교 - must, should 등 문구까지 세밀하게 비교
2 단계	<b>상호방문합동실사(Joint Validation Visit)</b> - 공인업체를 방문 공인심사 적정성 점검 - 상대국 현장심사 참관형태로 진행
3 단계	<b>상호인정 운영절차논의(Operational Process)</b> - 특혜부여, 정보교환 방법 등 추가논의 - 실질적 혜택 극대화를 위해 가장 중요
4 단계	<b>최고정책결정자 서명(Signing)</b> - AEO 상호인정협정문 작성 - 상호인정서 서명(세관당국간) 및 발표

※ 출처 : 한국 AEO 진흥협회

### 3. 2013 년 중소기업 AEO 인증 지원사업

AEO 라는 것이 물류보안 및 법규준수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조직과 인력의 확보, 인사, 구매, 전산, 총무, 수출입물류 등 거의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한 덩치이다 보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시간과 인력과 비용을 들이기가 참으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2011 년과 2012 년 두 해에 걸쳐 관세청은 AEO 공인을 받고 싶은 중소기업에게 인증에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여 약 100 여개 업체가 AEO 인증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한 바 있다.

이로써 AEO 는 일부 능력 있고 규모가 큰 대기업만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어떤 기업이든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써의 면모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

2013 년도에도 중소기업 AEO 인증지원 사업은 계속 될 것이며 지난 11 월 19 일 구체적인 사업공고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지원사업도 2012 년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아래 부문의 기업에 대하여 컨설팅 비용의 80%, 최대 수출업체의 경우 2,240 만원, 물류업체의 경우 1,000 만원을 지원한다.

이러한 정부의 사업을 중소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AEO 인증을 효율적으로 취득함으로써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Business Power 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4. 맺음말

국가간 MRA 가 확대됨에 따라 AEO 제도의 중요성과 그 효용은 점차 거대해 지고 있다. 지난 3~4 년간 관세청은 많은 기업들이 AEO 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는데 많은 힘을 쏟았지만, 앞으로는 인증 받은 기업 그리고 인증 받을 기업에 대한 내실을 다지는데 보다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년간 경험을 통해 축적된 Know-how 와 고도화된 심사기법은 AEO 제도를 보다 굳건히 하는 데에 크게 일조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남들보다 한발 앞서 준비하고 제도권에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신 성 훈

[shshin@customsservice.co.kr](mailto:shshin@customsservice.co.kr)

# 한-미 FTA 섬유규정 이것만이라도 알아두세요!

한-미 FTA가 발효된 후 우리나라 수출실적을 파악해보면 지난 5월 20일에 관세청 발표자료를 토대로 對미 수출은 11.3% 늘었고 FTA 혜택품목은 19.4%가 증가하였다. 또한 섬유제품도 전년 동기대비 2억 4,600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나타내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은 실제로 섬유 및 의류에 대한 관세징수액이 가장 많은 국가로서, 섬유 및 의류 분야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섬유 및 의류 조항이 독립된 내용으로 삽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가 맺은 자유무역 협정 중에서도 이러한 조항이 들어간 것은 한-미 FTA가 처음이다.

섬유제품은 전통산업으로서의 민감성 때문에 다른 품목에 비하여 그 기준이 엄격하여 그 해석 및 접근이 어려울 수 있겠으나 기초적인 사항부터 차근차근 이해해가며 미리 준비해둘 필요성이 있겠다.

섬유제품은 원료를 섬유(Fiber)로 만들고, 이 섬유가 방적공정을 거쳐 사(Yarn)로 생산되고, 이 사를 가지고 제직공정을 거쳐 직물(Fabric)이 된다. 직물은 재단공정(Cutting) 및 봉제공정(Sewing)을 거쳐 최종제품인 옷 등이 된다. 따라서 섬유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이러한 제조공정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공공정 기준이 많이 채택되고 있으며, 한-미 FTA는 의류의 공통 기본 원칙으로 '원사 기준(Yarn forward)'을 채택하고 있다.

## 1. 원산지 규정 및 관련 사항

한-미 FTA는 다른 FTA와 달리 섬유제품의 원산지규정을 제 4장에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제 4장은 관세율표상 제 11부 '방직용 섬유와 이들 제품(제 50류에서 제 63류)' 뿐만 아니라 제 4202호의 여행 가방류 일부, 제 7019호의 유리섬유 및 이들 제품, 제 9404호의 침구류에 적용되며,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하기와 같다.

### 1)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규정

한-미 FTA 협정상 yarn-forward 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섬유 및 의류 제품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북미 자유무역 협정(NAFTA)의 설명서상 용어를 사용하였다. 섬유 및 의류 제품의 품목별 원산지기준에 Yarn Forward 규정이 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 Forward 규정이 혼합되어 있거나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섬유 및 의류 특정 제품에 대한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확한 HS CODE 및 원산지 규정을 찾아보아야 한다.

섬유 및 의류분야의 공통기본원칙으로 원사기준(Yarn Forward)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사(Yarn)를 만드는 공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직물을 만드는 공정, 재단 및 봉제 공정까지 해당국에서 수행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제 61류 또는 제 62류의 의류제품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정하고 있어 개별기준이 원사기준(Yarn Forward)이라 하더라도 원산지 직물을 사용하여 재단 및 봉제를 하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Fabric Forward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확히 판정하기 위해 개별 품목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적용해야 한다.

### 2) Forward 규정 설명

한-미 FTA에 적용되는 품목별 원산지규정으로는 파이버-포워드, 안-포워드, 패브릭-포워드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파이버-포워드(Fiber-forward)

이는 가장 엄격한 규정으로서, 천연 섬유는 역내에서 재배되고 인조섬유 스테이플섬유는 역내에서 방사(extrude)

돼 생산된 것을 사용해야 역내산으로 인정받는 규정이며, 대부분 면(Cotton) 및 인조스테이플(Man-made staple)과 같은 물품에 적용되고 있다.

#### 나. 안-포워드(Yarn-forward)

역내에 방적되거나 방사되어 생산된 사를 사용해야 역내산으로 인정받는 규정으로 파이버-포워드 보다 완화된 규정이다. 즉, 섬유(Fiber)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 다. 패브릭-포워드(Fabric-forward)

역내에서 제직(Woven) 또는 편성(knit) 공정을 거쳐 생산된 직물(Fabric)을 사용해야 역내산으로 인정되는 규정으로 안-포워드보다 완화된 규정이다. 즉 사(Yarn)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해도 된다.

## 2. 원산지 검증

섬유 및 의류 제품은 수입국 세관 요청에 따라 수출당사국 세관에서 검증을 수행하게 되어 있으며, 수입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해 검증을 지원하는 공동검증도 할 수 있다. 검증을 수행하는 동안 수입당사국은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있고, 검증결과나 합리적인 의심의 결과로 검증이 진행되는 동안에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때까지 특혜관세 적용을 계속 정지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섬유 및 의류 부분은 미국 세관의 중점관리 대상품목이므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철저한 원산지 관리가 필요하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이선경

[sklee@customsservice.co.kr](mailto:sklee@customsservice.co.kr)

# 원산지 표시 제도

## I. 개요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일부 예외적인 물품(원산지 표시 면제 물품 및 원산지 표시 면제 사유에 해당되는 물품)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원산지 표시에 대해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지난 2011년 6월 21일에 신설된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 3-1 조 4항과 관련하여 수입통관 상 여러 가지 이슈 사항이 발생 되고 있다.

## II.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물품

지난 2011년 6월 21일에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현품에 원산지 표시가 적절히 되어있더라도 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수입통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물품이 시계, 신발 및 구두와 같은 물품군으로 비록 현품에 적절한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더라도 그 포장단위인 물품 박스에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지 않아 통관이 보류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관, 수입자 및 관세사 간의 논란이 발생되어 최근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유의사항이 하기와 같이 시달되었다.

『최종구매자가 직접 현품을 일일이 확인하고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고가의 시계, 가방 등과 함께 수입되는

포장상자에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 품명, 규격, 바코드 등 구체적인 물품정보가 함께 표시되지 않고 단지 판매된 상품을 넣어주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는 동 고시 제 3-1 조제 4 항의 “포장단위로 판매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비록 최종구매자가 현품을 일일이 확인 하여 구매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박스에 일정 정보가 함께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는 포장단위로 판매 하는 경우로 보아 해당 박스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됨을 명시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포장단위로 판매되는 물품을 수입하고 하는 경우 박스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확인 여부가 우선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 III. 원산지 표시

대외무역법 제 33 조 1 항에 근거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을 지정하고 있다. 즉,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해당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다는 목적을 지니는 바 소비자가 명확하게 원산지를 인식할 수 있다면 해당 물품의 원산지는 적절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소비자들은 물품 포장 박스를 제거하고 물품만 가져가는 구매패턴을 지니고 있다. 특히 신발 및 구두를 구매하는 경우 박스는 미리 버리고 신발 및 구두만을 따로 봉투에 담아 가는 구매 패턴이 보편화 되어있는 것이다. 더욱이 인터넷 구매의 경우에도 물품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물품의 박스를 제거하는

옵션을 제거하는 사이트 등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런 구매패턴의 변화를 보더라도 소비자들은 물품의 원산지를 비롯한 기타의 정보 확인은 현품인 신발 및 구두를 통해서만 확인하며, 포장 단위인 박스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비록 박스에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현품에도 똑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바코드 등의 정보는 물류 흐름을 위한 정보이지 이로 인해 소비자들 이 현품에 대한 정보의 혼동을 가질 위험은 없는 것이다.

## IV. 결론

수입되는 물품에 있어 원산지 표시는 당연한 수입자의 의무 사항이며, 이에 대해 정확한 신고를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관세사들의 역할이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다고 판단되는 물품 임에도 추가로 원산지표시를 하게 되어 통관보류에 따른 물류비용의 증가 및 원산지 표시 보수작업을 통한 기타 비용의 증가로 인해 경쟁력 있는 제품 공급에 차질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시장 경제를 통해 좋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한 규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때이다.

산한관세법인  
관세사 성 기 창  
[kcsung@customsservice.co.kr](mailto:kcsung@customsservice.co.kr)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주요 개정**

**1. 개정사유**

품목분류 변경사항 반영

**2. 개정내용**

- **Compact Ball Spline; WSP8H250**
  -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 8482.10-2000 호
  -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 8483.10-9090 호

- **AC VIBRATOR MOTOR; LINEAR VIBRATOR; 175HZ,1.2-18GRM**
  -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 8501.10-2000 호
  -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 8479.89-9099 호
- **DC VIBRATOR MOTOR; COIN, 3.0V, 90MAMAX, 9000-1**
  -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 8501.10-2000 호
  -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 8479.89-9099 호

- **수면비행선박(wig-in-ground-effect craft); WSH-500(type A)**
  -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 8802.20-2000 호
  -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 8901.10-0000 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사유**

「관세법」 제 91 조제 4 호 관세 감면대상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

제 95 조제 1 항제 3 호 관세 감면대상 공장 자동화물품과 관련하여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을 위하여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품목 조정

**2. 개정내용**

① 임상시험용 의약품 중 시험약 및 위약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2015 년 12 월 31 일까지 3 년간 연장

『관세법 제 91 조제 4 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 (제 39 조제 4 항 관련)』

**2. 질병치료와 관련한 물품 등**

다. 「약사법」 제 34 조에 따른 임상시험용 의약품 중 시험약(시험약에 대한 위약을 포함하며, 2015 년 12 월 31 일까지 수입신고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품목(현행 66 개) 중 8 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고, 18 개 품목을 제외하여 56 개 품목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3. 시행일**

2013 년 1 월 1 일부터 적용

**□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 추가품목**

호	소호	품명
8461	30	브로우칭 머신
8463	20	전조기
8465	99	릴투릴 펀칭기 (타발기 또는 펀칭기)
8479	81	코팅머신
	89	
8486	30	롤투롤 라미네이터(합착기)
8486	30	롤투롤 노광기
9030	39	전기특성 시험기
9031	80	블랭크마스크 검사 설비 (Blank Mask Inspection System)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 118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은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 바, 새로운 관세경감 수요를 반영하여 현행 관세경감 대상으로 하고 있는 목 중 전원공급기 등 21 개 품목을 제외하고, 열증기압축기 등 17 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84 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2. 관세경감 추가대상 품목**

① 태양광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

회전건조기, 열증기 압축기, 유동층 반응기 전력공급 장치, 고압 유동층 흡착 반응기, 폴리실리콘 수집장치, 폴리실리콘 시드 공급장치, 폴리실리콘파우더 수집장치, 초순수 증류수 제조기, 실험실용 화학증착 반응기, 형광 엑스선 측정기, 오븐, 매트릭스 트랜스퍼 시스템

② 동력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  
 해상풍력발전기용 타워, 해상풍력발전기용

타워플렌지, 해상풍력발전기용 볼트 및 너트, 해상풍력발전기용 메인프레임, 해상풍력발전기용 허브

**2. 시행일**

2013 년 1 월 1 일부터 적용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임 보 화

[bhlim@customsservice.co.kr](mailto:bhlim@customsservice.co.kr)

Customs Precedent ㉔ 조세심판원 판례로 알아보는 관세평가

#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영향여부

(국심 2004 관 0062 2005.09.15)

□ 거래사실

- ① oo 본사가 청구법인의 지분을 전액인수하여 그 관계가 특수관계임
- ②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oo 본사로부터 인공관절증 골절치료용재료를 정형외과병원에 판매·공급할 목적으로 수입하였음.
- ③ 골절치료시술기구인 쟁점물품은 인공관절 등의 판매촉진과 의료기관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정형외과병원에 무상대여하기 위하여 수입
- ④ oo 본사가 청구법인에 송부한 문건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판매촉진을 위하여 70% 내지 85% 가격을 할인공급함

□ 청구인의 주장

쟁점물품은 국내정형외과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기위하여 수입한 골절치료시술용 기구로서 처분청은 oo 본사가 제공한 할인율을 근거로 상징적인 가격에 불과한 oo 내 권장 소비자가격이 실제거래가격임을 입증하지도 못하면서 이를 과세가격으로 함

□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oo 본사는 특수관계에 있고, 쟁점물품이 국내병원에 무상대여를 목적으로 수입된 점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관세법 제 30 조 제 3 항 2 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WCO 관세평가위원회 권고의견 16.1 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실질심사과정에서 확인한 70% 내지 85%의 할인율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 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 경정처분은 정당함

□ 쟁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할인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한 경우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법령

관세법 제 30 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각호 생략)

- ② 제 1 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 31 조 내지 제 35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 3. 당해 물품의 수입 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 판 단(결정)

- ① 골절치료시술기구인 쟁점물품을 인공관절 등의 판매촉진과 의료기관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무상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고, 판매촉진을 위하여 70% 내지 85%의 가격을 할인공급한 사실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은 oo 본사로부터 할인받은 가격으로 수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정이나 조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 ② 관세법 제 30 조 제 3 항 제 2 호에 의하면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관세법

제 31 조 내지 제 35 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순차적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③ 쟁점물품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사정으로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나,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에 있어서 oo 본사가 70% 내지 85%를 할인하여 공급한 사실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WCO 관세평가위원회 권고의견 16.1 을 적용하여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 검토의견

① 쟁점물품인 시술기구를 인공관절 등의 판매촉진과 의료기관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정형외과병원에 무상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한 것으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함

② 처분청이 oo 본사가 70% 내지 85%를 할인하여 공급한 사실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우로 보아 관세법 제 30 조의 거래가격에 의한 과세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는바, 할인금액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아닐 뿐더러, 매매거래의 반대급부가 있는 조건에 대한 금액이 아니므로 할인금액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조건의 영향을 받은 금액으로 본 것은 합당하지 않다.

③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 30 조 3 항 제 1 호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로 보아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거래가격 과세방법인 제 1 방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제 2 방법(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제 3 방법(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제 4 방법(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박 중 일  
[jipark@customsservice.co.kr](mailto:jipark@customsservice.co.kr)



#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Shinhan